

SUJAIN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 입주자모집공고



1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03.(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외국인, 외국인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력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김포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4.13.(월)	2026.04.14.(화)	2026.04.15.(수)	2026.04.21.(화)	2026.04.24.(금) ~ 2026.04.30.(목)	2026.05.06.(수) ~ 2026.05.08.(금)
방법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PC·모바일) 청약홈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71-8)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 (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투기(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능한지 적용 인정주택으로, 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능한지 적용주택(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4조제1항제3호)	10년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자격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수도권)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을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과열지구)이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김포시 내 6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 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판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의 판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4.21.)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판매제한기간	3년 (다만, 기간 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해제)	

2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청 주택과 - 12533호 (2026.04.0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도시기개발사업 B1BL(김포시 사우동 167-1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8층 7개동 총 639세대
- [특별공급 349세대(7관추천 51세대, 다자녀가구 64세대, 신혼부부 117세대, 노부모부양 20세대, 생애최초 9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 면적(이하 주차장정)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기간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생애	계		
2026 000073	01	084.9339	84	84.9339	25.8007	110.7946	58.0486	168.8432	509	51	50	117	16	97	331	178	20	
	02	105.2083	105	105.2083	29.2674	134.4757	71.8545	206.3302	130	-	14	-	4	-	18	112	8	
합 계									639	51	64	117	20	97	349	290	28	

3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타입 (약식 표기)	층별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 가치세	계	1차	2차	중도금(60%)						입주 지정일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84	1층	15	317,238,500	336,861,500	-	654,100,000	10,000,000	55,410,000	65,410,000	65,410,000	65,410,000	65,410,000	65,410,000	65,410,000	65,410,000	65,410,000	196,230,000
	2층	20	322,379,500	342,320,500	-	664,700,000	10,000,000	56,470,000	66,470,000	66,470,000	66,470,000	66,470,000	66,470,000	66,470,000	66,470,000	66,470,000	199,410,000
	3층	20	325,774,500	345,925,500	-	671,700,000	10,000,000	57,170,000	67,170,000	67,170,000	67,170,000	67,170,000	67,170,000	67,170,000	67,170,000	201,510,000	
	4층	20	332,661,500	353,238,500	-	685,900,000	10,000,000	58,590,000	68,590,000	68,590,000	68,590,000	68,590,000	68,590,000	68,590,000	68,590,000	205,770,000	
	5층	20	338,500,000	360,500,000	-	700,000,000	10,000,000	6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210,000,000		
	기준층	414	345,077,500	366,422,500	-	711,500,000	10,000,000	61,150,000	71,150,000	71,150,000	71,150,000	71,150,000	71,150,000	71,150,000	71,150,000	213,450,000	
105	1층	6	350,641,490	371,053,200	37,105,320	758,800,000	10,000,000	65,880,000	75,880,000	75,880,000	75,880,000	75,880,000	75,880,000	75,880,000	75,880,000	227,640,000	
	2층	6	356,325,310	377,067,900	37,706,790	771,100,000	10,000,000	67,110,000	77,110,000	77,110,000	77,110,000	77,110,000	77,110,000	77,110,000	231,330,000		
	3층	8	360,068,320	381,028,800	38,102,880	779,200,000	10,000,000	67,920,000	77,920,000	77,920,000	77,920,000	77,920,000	77,920,000	77,920,000	233,760,000		
	4층	8	367,692,970	389,097,300	38,909,730	795,700,000	10,000,000	69,570,000	79,570,000	79,570,000	79,570,000	79,570,000	79,570,000	79,570,000	238,710,000		
	5층	8	375,225,200	397,068,000	39,706,800	812,000,000	10,000,000	7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243,600,000		
	기준층	94	381,371,130	403,571,700	40,357,170	825,300,000	10,000,000	72,530,000	82,530,000	82,530,000	82,530,000	82,530,000	82,530,000	82,530,000	247,590,000		

3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다면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 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 특례)	신혼부부	청약 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대상) 제외,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다면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 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각호)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 신청자의 부동산 가액 선정 시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 혼인 특례 또는 출산 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 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 입주자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 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 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 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 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최초로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 혼인 특례와 출산 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제38조제1호 적용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등·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효행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공동 유의사항"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효행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제안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문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전문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문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문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문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문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문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문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문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문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문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문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매부양))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문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문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문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문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문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문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문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문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문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문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문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전문면적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문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문면적 85㎡ 초과	-	100%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자격 가입기간 점수에 배후자 입주자자격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후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자격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자격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5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통·호수의 공급대금 및 계약금을 확인 후 계약기간 내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계약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특별공급/일반공급)	2026.05.06.(수) ~ 2026.05.08.(금) (10:00 ~ 16:00)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71-8번지)

6 공금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KB국민은행	393337-04-010918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PF금융지사	입금 시 동호수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1동 501호' 당첨자 홍길동--1010501홍길동)

* 최초입금에 따른 문제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발코니 확장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약식표기 (타입)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6.08.13.	입주시(입주지정기간 내)	
84	6,640,000	664,000	664,000	5,312,000	계약시 공사부분 확인바람
105	6,370,000	637,000	637,000	5,096,000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

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계약금, 중도금, 잔금	KB국민은행	393337-04-010921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PF금융지사

7 기타 사항

감리회사 및 관리계약 금액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원)	비고
건축	(주)엠앤디이중합건축사사무소	2,739,660,000	VAT 포함
전기	(주)한기기술단	671,795,980	
소방	(주)세광이씨	896,653,000	
정보통신	(주)에다종합설계감리사무소	174,900,000	